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가단5087575 판결 [계약보증금반환청구]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피고대한민국

변론 종결2021. 6. 24.

판결 선고2021. 8.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고무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방위사업청장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여 2016. 6. 15. 피고와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은 '쉴조립체 시일·평면형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쉴조립체 외 34개 항목'에 관하여 총 계약금액 354,100,000원, 계약보증금 35,410,000원, 납품일자 2016. 12. 15.부터 2017. 3. 7.까지로 정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C	시일, 평면형	2,109	20,518,461	D
E	853	8,298,837		

다.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라. 피고는 2016. 8. 31. 이 사건 계약의 도면 및 부품번호를 명확히 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7개 항목에 대한 수정을 제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제의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의 도면이 기존의 'D'(이하 '이 사건 1도면'이라고 한다)에서 'F'(이하 '이 사건 2도면'이라고 한다)로 변경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은 모두 제작, 납품하였으나 이 사건 제품은 제작, 납품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9. 25. 원고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7.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2도면에 기재된 금속재질을 구할 수 없다면 이 사건 1도면에 기재된 금속재질로 이 사건 제품을 제작, 납품할 것을 제의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납품을 재차 촉구하였고, 원고는 2017.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2도면에 사용된 금속재질을 국내외에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제품을 제작, 납품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사. 피고는 2017. 12.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75조,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등을 근거로 계약보증금 35,410,000원 전액에 대한 국고귀속조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가 피고의 수정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 제품의 도면이 이 사건 2도면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재질이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중 특정한 성분을 지닌 "KS D3752, SM9CK,

SM15CK 또는 KS SM10~SM15C"라는 재질(이하 '이 사건 재질'이라고 한다)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재질은 국내 철강업체가 생산하지 않고 있고 이를 중국 등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도 불가능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질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없거나 그 불이행에 대하여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조치는 위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계약의 이행가능성은 원고 스스로가 계약 전에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수정에 동의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재질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재질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조치는 적법하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982. 11. 1. 발행된 이 사건 2도면은 이 사건 재질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제품을 제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는 국내 및 일본, 미국 등의 철강회사들이 수요가 없어 이 사건 재질을 생산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주문 생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량을 주문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제품의 제작에 필요한 수량을 주문생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피고는 주식회사 G이라는 업체가 최소주문량 10톤 이상인 경우에 이 사건 재질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하는데1) (을 제2호증),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량은 약 300kg에 불과하다), 피고 역시도 이 사건 계약 이전인 1981년부터 2015년까지 소외 H으로부터 이 사건 1도면을 적용한 제품만을 납품받아왔고, 위 H도 2017년 피고와 계약한 후 이 사건 재질을 국내에서 구할 수 없어 대만의 한 업체로부터 수입한 탄소 강재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였으나 위 탄소 강재 역시 이 사건 재질과 다른 재질로 확인된 점, 국방과학연구소는 2018. 9. 5. 이 사건 2도면을 개정하여 이 사건 재질을 대체할 수 있는 재질을 추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이 수정되었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재질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그 이행이 불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고, 원고에게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35,4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정민

1) 한편 원고는 위 G이라는 업체가 이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